

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· 회의수당및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6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9. 7. 14.

발 의 자 : 최현덕의원 외 4인

1. 개정이유

- 0 지방자치시대에 의회 의원으로서 그 직책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· 회의수당및여비의 지급에 있어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 조정코져 하는데 있음.

2. 주요골자

- 0 고성군의회 의원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6조제3항 별표 1의 개정

당 초				변 경			
구 분	일 비	숙박료 (1일당)	식 비 (1일당)	구 분	일 비	숙박료 (1일당)	식비(1 일당)
의 장 부의장	10,000	41,000	25,000	의 장 부의장	10,000	41,000	25,000
의 원	10,000	19,500	18,000	의 원	10,000	22,000	18,000

※ 개정조례 후 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은 공무원 국내여비 기준에 준함.

3. 참고사항

- 0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차하위의 여비 상당액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음.(4급상당)
 -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·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(제7조 준용)

고성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
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내용을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3항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범위

(단위 : 원)

당 초				변 경			
구 분	일 비	숙박료 (1일당)	식 비 (1일당)	구 분	일 비	숙박료 (1일당)	식 비 (1일당)
의 장 부의장	10,000	41,000	25,000	의 장 부의장	10,000	41,000	25,000
의 원	10,000	19,500	18,000	의 원	10,000	22,000	18,00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